

디자인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 [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] 공고

우수제품 디자인 전주기 지원으로 제품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「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」지원대상 공급기업을 모집하오니,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6월 29일
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공고 및 접수기간 : 2021. 6. 29. (화) ~ 7. 6. (화) 18:00

사업목적

- 기 선정된 수혜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주도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향상
- 공급기업의 디자인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1:1 PM(Project Manager)* 전(全)주기 개발지원

* PM(Project Manager) : 수혜기업의 디자인 혁신상품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전략적 디자인 개발 계획, 실행에 관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

지원규모 : 1개사

사업기간 : 총 6개월 내

신청방법 : 기 선정된 수혜기업의 과제에 대해 신청(1개 과제에 한함)

- 선정 기업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공급기업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

연번	기업명	과제명
1	수혜기업-D	스마트 전기 굴착기 신제품디자인 개발

* 수혜기업 제안요청서 첨부파일 참조

□ 신청자격

○ (공급기업) 전라북도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(신고필증 “전북” 등록기업)

구분	신청자격
디자인 전문기업 (제품+브랜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(4대보험 기준) ○ 소재지 :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○ 종합디자인회사*(제품+브랜드) 단독 신청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: 디자인회사 신고필증 '종합'표기 - PM지정 : 분야별 각 1명 또는 총괄 1명 PM 지정 신청 필수 ○ 제품, 브랜드 분야 단독 전문 기업일 경우 컨소시엄 신청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기업(제품)+참여기업(브랜드) 컨소시엄 : 각 기업별 각 1명 PM지정 ※ PM요건 : (공통) 분야별 5년 이상 경력 소지자(경력증명 제출 필수)

※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기업은 반드시 제품디자인 기업이어야 함

2. 사업수행

□ 단계별 사업(수행) 내용

○ ‘①상품기획·디자인개발 → ②시제품개발 → ③마케팅’ 단계 지원

구분	내용
1단계	상품기획·디자인개발
▼	중간점검(발표)
2단계	시제품제작(워킹모업)
▼	중간점검(현장점검)
3단계	마케팅 지원
▼	최종평가(발표)
최종평가	최종평가

* 과제별 협의에 따라 목업제작으로 대체할 수 있음

□ 지원금액 및 사업비 지급절차

○ 지원금액

- (총사업비) 100,000천원 내외 / (기업당) 80,000천원 내외, (기업부담금) 총사업비의 20%

※ 총사업비는 과업범위, 예산계획 등을 고려, 평가위원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(단, 별도 및 추가개발은 본 사업과 관련 없이 진행가능)

○ 사업비 지급절차

- ① (기업부담금) 개발비의 20% 선금 지급(수혜기업→공급기업)
 - ② (1차 지원금) 협약 후, 지원금의 50% 지급(전북TP→공급기업)
 - ③ (2차 지원금) 1단계 개발 완료 후, 지원금 50% 지급(전북TP→공급기업)
 - ④ (부가가치세) 최종 정산 후, 총 개발비의 10% 부가가치세 지급(수혜기업→공급기업)
- ※ 기업세금계산서 발행(1차 - 기업부담금 선금 지급 후 / 2차 - 최종 정산 후)

3.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

평가방법

선정평가위원회
· 기 선정된 수혜기업 중 1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수행계획 PT발표(발표 10분, 질의응답 20분 발표)
· 선정평가위원회 세부일정 개별통보(5월 4주 중)

평가위원 : 외부전문가 등 5인 이내

평가기준

- 평점 70점 이상 : 선정
- 평점 70점 미만 : 선정대상에서 제외

평점집계 :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

평가항목

평가항목	배점	세부항목
과제이해도	20	- 개발대상에 대한 현황분석 및 이해도 - 디자인 컨셉 및 시장분석 등
디자인개발 프로세스 및 사후관리	10	- 디자인 개발 전략에 따른 목표·내용·범위의 명확성 - 양산화에 따른 감리 및 디자인 사후 관리 계획
필요성 및 활용가능성	20	- 신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및 디자인기여도 - 디자인 개발 가능성 제시 여부
디자인개발 역량	20	- 참여인력 구성, 업력 등 디자인개발 역량 - 기업의 디자인 추진능력
디자인개발 지원 파급효과	30	- 개발에 따른 직·간접적 시너지 및 활용 - 상용화 및 판매 전략의 현실성, 매출 및 고용 기대효과 등

5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신청서류

-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**온라인 접수(R&D종합정보시스템)**

※ 제출서류 관련 서식은 R&D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rnd.jbtp.or.kr>), 전북테크노파크(<https://www.jbtp.or.kr>), 전북디자인센터(<https://jbdc.jbtp.or.kr>) 등에서 다운받아 작성

구분	제출서류	비고
공급기업	① 지원사업 수행신청서	서식 1호
	② 수행계획 요약서	서식 2호
	③ 사업계획서	서식 3호
	④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서식 4호
	⑤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	서식 5호
	⑥ 공급기업 PM확약서	서식 6호
	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
	⑧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	('19~'20)
	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	-
	⑩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	-
	⑪ 4대보험 가입증명서	'21년 발급분

□ 기타문의처

- 문의처 :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
- 문의전화 : 063-839-0205
- 문의메일 : chaewon90@jbtp.or.kr

6. 지원 제한대상 및 기타 유의사항

□ 지원 제한대상

- 공급기업과 수혜기업 간 대표, 이사 간 이해관계(가족, 친인척, 지분공유 등)인 경우
- 수혜기업이 개발완료 이전에 타 시군으로 소재지 변경(지원금 미지급)
- 기 선정된 정부 및 타지자체 지원 과제를 제출한 경우
-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미납 또는 연체한 경우
- 개발수행능력 또는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
□ 지원취소

- 사업 추진 중이더라도 입찰불가, 지원제한에 해당하여 적발되었을 경우
- 협약서, 사업계획서, 관련 문서에서 지정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
-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
- 과업범위 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

□ 기타 유의사항

- **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(적격과제 없을시 재공고 진행)**
- 지원금액은 과업범위, 예산소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정 및 조정될 수 있음(단, 별도 및 추가개발은 본 사업과 관련 없이 진행가능)
-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

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됨

- 기타 수혜·공급기업 간 사전 부정 담합 등 부정사유 적발 시 (재)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최대 5년간 참여 제한됨

※ 각 과제 관련 내용 및 기타문의사항은 담당자를 통해 문의 가능

- 특정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

※ 기타 문제과제의 경우 관련 협약서와 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조치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(2020.1.1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,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(공공재정지급금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
※ 제재부가금

- 허위청구 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
: 받은 지원금의 5배
- 과다청구 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)
: (받은 지원금 -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목적 외 사용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
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